# 정 관

제 정	1993.04.15	개 정	1999.02.26	개 정	2007.03.28	개 정	2021.08.24
개 정	1995.03.6	개 정	2000.03.20	개 정	2008.01.23	개 정	2022.11.30
개 정	1995.07.01	개 정	2001.05.17	개 정	2009.09.02		
개 정	1995.07.25	개 정	2001.06.29	개 정	2010.03.26		
개 정	1995.12.29	개 정	2001.10.26	개 정	2010.11.12		
개 정	1996.10.31	개 정	2003.08.27	개 정	2010.12.31		
개 정	1997.03.04	개 정	2004.03.25	개 정	2015.01.27		
개 정	1998.03.27	개 정	2004.04.19	개 정	2015.04.30		
개 정	1998.06.23	개 정	2005.03.24	개 정	2017.03.23		
개 정	1998.11.27	개 정	2006.01.25	개 정	2019.02.13		

[기획예산부 042-600-8157]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상호)** 이 공사는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Korea Gas Technology Corporation(약칭 "KOGAS-Tech")이라 칭한다.<개정 2005.3.24.>

**제2조(목적)**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08.1.23, 개정 2009.9.2, 2010.12.31, 2015.4.30, 2019.2.13>

- 1. 가스설비 유지보수, 개·보수공사업 등 이에 관련된 사업
- 2. 가스배관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
- 3. 플랜트사업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
- 4. 플랜트설비 유지·보수, 개보수공사업(가스설비 건설 포함) 등 이에 관련된 사업
- 5. LNG 및 수소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EPC와 O&M
- 6. 바이오가스 제조(정제)를 활용한 사업
- 7. 플랜트 신기술 제품 제작 및 판매 사업
- 8. 냉열 등 천연가스 특성을 활용한 사업
- 9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10. 이산화탄소 포집, 활용, 저장 및 탄소 자원화 사업 <신설 2021.08.24>
- 11. 건설기술용역 사업
- 12.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해외사업<개정 2021.8.24>
- 13. 제1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><개정 2021.8.24>
- 14.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·외 관련 업체에 대한 출자 <개정 2021.8.24>
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공사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둔다. <개정 1998.6.23, 2001.10.26, 2010.11.12>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<신설 1998.6.23.>
- **제4조(공고방법)** 공사의 공고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kogas-tech.or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<개정 1995.7.1, 1998.6.23, 2003.3.20, 2004.3.25.,2010.11.12, 2022.11.30>
- 제4조의2(정관의 변경)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17.3.23>

#### 제 2 장 주 식

- 제5조(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만주로 한다. <개정 1995.12.29.>
- 제6조(공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공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5만주로 하고,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.
- **제7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**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, 10주권, 100주권, 1,000주권, 1만 주권, 10만 주권의 6종으로 한다.
- 제7조의2(주권의 불소지) 공사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1.6.29.>
- 제8조(신주의 인수권) ① 공사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. 다만, 신주 인수권자가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
  - ② 신주배정의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9조(명의개서) 공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공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
  - 2. 양도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과 양도증서
  - 3. 상속, 유증, 경매, 합병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과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
- 제10조(주권의 재발행) ① 주권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주권의 상실로 인한 경우에는 주권상실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
  - 2. 주권의 훼손, 분합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주권. 다만,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권상실의 예를 준용한다.
  - ② 주권을 재교부할 때에는 이 공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.

- 제11조(질권의 설정) 공사의 주권을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 및 질권설정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질권이전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
- 제12조(등록 및 말소의 정지) 공사는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공고로써 미리 정한 기간 중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설정, 이전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한다.
- 제13조(주주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의 제출) 공사의 주주, 질권등록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, 성명 및 인감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### 제 3 장 주주총회

- 제14조(소집) ① 공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09.9.2>
  - ②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주간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주주전원 출석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1.5.17> ③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의안 외에는 의결하지 못한다.
- **제15조(의장)**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된다. 다만, 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24조 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.9.2.>
- 제16조(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등록된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제17조(성립 및 의결) 주주총회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.
- 제18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주주는 공사의 다른 주주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법인이 주주일 경우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의사록) 주주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회의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01.6.29>

#### 제 4 장 이사 및 감사

- **제20조(이사 및 감사의 수)** ① 이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.<개정 2009.9.2>
  - ② 이사는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5인 이내로 한다. 다만,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<개정 1997.3.4, 2015.1.27, 2017.3.23>

#### 제20조의2(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.
  - 1.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(단,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제외)
  - 2.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(대부관계 제외)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
  - 3. 후보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(단. 교육공무원 제외)
  - 4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 - 5.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 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상임이사와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으며,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.
- ③ 이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(단, 상임이사 및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 이 경우퇴직한 이사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[본조신설 2017.3.23.] <개정 2022.11.30>
- 제21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사장은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 - ② 감사는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 - ③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.
  - ④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경제, 경영,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
  - 2.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(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,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[전문개정 2017.3.23.] <개정 2022.11.30>
- 제21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사는 이사와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위원 및 비상임이사 외에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이사회가 비상임이사 외에 선임한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.
  - ③ 공사 상임이사감사 및 직원과 공무원(교육공무원 제외)은 제2항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 -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-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임원추천위운영규정을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7.3.23]

#### 제21조의3 (이사와 감사 후보자 추천기준 등)

-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과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와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.
- 이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제30조제4항에 따른다.[본조신설 2017.3.23.]

#### 제21조의4(이사와의계약 등)

-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- ② 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사장은 감사를 제외한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,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7.3.23.]
- 제22조(이사 및 감사의 임기)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사장을 제외한 다른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② 이사와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,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은 거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 제2항의 경영계약을 다시 체결하되, 제21조의4 제1항의 임원추천위원회와 혐의는 거치지 아니한다.
  -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[전문개정 2017.3.23.]
- 제23조(이사 및 감사의 보선) ① 이사와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 정관에 따라 새로 선임한다. ②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. [전문개정 2017.3.23.]
- 제24조(이사 및 감사의 직무) ①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경영을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<개정 2009.9.2>
  -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<개정 2017.3.23>
  - ③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며,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. <개정 2017.3.23.>
  - ④ 사장의 유고 시에는 사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또는 그러한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09.9.2.>
- 제25조(이사 및 감사의 보수) ①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.
  - ②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한다.
  -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7.3.23.]

#### 제26조(직원의 임면) <삭제 2001.6.29>

#### 제 5 장 이사회

- 제27조(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9.2>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- ③ 의장은 회의일시, 장소와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**제28조(성립 및 의결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01.6.29, 2017.3.23> ②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할 사항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.<신설 2001.6.29.>

제29조(제안자) <삭제 2001.6.29.>

제30조(긴급사항)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우선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9.9.2.>

제31조(부의사항) <삭제 2001.6.29.>

제32조(의사록)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01.6.29>

#### 제 6 장 회 계 <개정 2022.11.30>

제33조(회계년도) 공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제34조(결산) 사장은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, 정기주주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9.2., 2017.3.23>
- 제35조(이익금의 처분) 공사의 매 사업년도 이익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. 단,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 이외의 용도로도 처분할 수 있다.<개정 2001.6.29>
  - 1. 이월손실금의 보전
  - 2.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
  - 3. 기타 법정적립금
  - 4. 주주에 대한 배당금<개정 2001.6.29>
  - 5. 임의적립금<개정 2001.6.29>
  - 6. 이월이익금
- 제36조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<신설 2001.6.29>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01.6.29>

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,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.<신설 2001.6.29>

#### 제 7 장 기 타

제37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다.

제38조(사규의 제정) 사장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규를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다.<개정 2001.6.29, 2009.9.2>

제3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이 공사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, 기타 제반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09.9.2.>

제40조(경영공시) 공사는 투명성 확보와 주주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공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, 공시내용과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.<개정 2007.3.28 >

#### 부 칙

- ① 현물출자의 세부명세는 별지와 같다.
- ②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③ 한국가스기술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
## 발 기 인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2번지

성명: 한국가스공사 사 장 박 청 부 (인)

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훼밀리아파트 218동 1106호 성명 : 한국가스공사 부 사 장 선 우 현 범 (인)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70번지 11호

성명: 한국가스공사 기획본부장 김 정 환 (인)

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2번지 대림아파트 5동 806호 성명 : 한국가스공사 관리본부장 박 일 근 (인)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91번지 14호

성명 : 한국가스공사 영업본부장 오 혁 근 (인)

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번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4동 503호 성명 : 한국가스공사 생산공급본부장 김 호 경 (인)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삼호아파트 2동 402호 성명 : 한국가스공사 건설본부장 최 인 영 (인)

부 칙

이 정관은 199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변경된 정관에 의한다.

이	정관은	1998년	6월	23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정관은	1998년	11월	<u>]</u> 27일부터	] 시행한다.	부	칙
이	정관은	1999년	2월	26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정관은	2000년	3월	20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ଠା	정관은	2001년	5월	17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					시행한다.	부	칙
					시행한다.	부	칙
						부	칙
					시행한다.	부	칙
					시행한다.	부	칙
이	정관은	2004년	4월	19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정관은	2005년	3월	24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정관은	2006년	1월	25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ो	정관은	2007년	4월	1일부터	시행한다.		

### 부 칙

이 정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정관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정관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정관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이사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20조 제2항은 상임이사의 경우에
- 이 정관 시행 이후 상임이사가 3인 이상일 때부터 시행하고, 시행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정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정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【별지】

# 현물출자명세

출자자	현물의 소재지	종류	품목	ITEM수	수량	금액(원)	교부한 주식수	
	한국가스공사 본 사	차량운반구	1	1	1	5,800,000		
한국가스공사	한국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	차량운반구 공구 와 기구	2	3	3	35,200,000 114,943,000	50,000주	
	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무소	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와 기구 비 품	11 4 101 2	14 21 300 4	22 21 2,285 15	16,707,000 123,200,000 196,984,000 7,166,000		
현물금액총계					2,684	500,000,000		